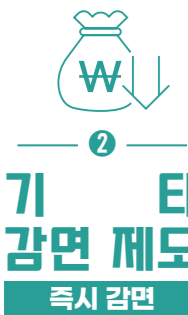




선박 저속운항 (VSR)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운항한 선사 • 대상선박 : 4개의 대상 선종 중 3,000톤 이상 외항선 • 권고속도 : 12노트(컨'선·자동차운반선), 10노트(LNG운반선·세미'컨'선)
산식	선종별 선박입출항료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 감면율 : 30%(컨'선·자동차운반선), 15%(LNG운반선·세미'컨'선) • 계절관리제 기간(1월~3월, 12월) 중 참여 선박에 대해 10%p 추가 감면
비고	Port-MIS를 통한 저속운항선박 지원신청서 제출, 해양수산부의 AIS(선박위치정보)를 통한 검증 인센티브 지급액이 예산 초과 시 예산 한도 내에서 감면율 비율 대로 재조정 이미 항비를 감면받고 있는 선박의 경우 기존 감면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제외 : ① 연간 총입항 횟수 중 60% 미만으로 저속운항 참여한 선박 ②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③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④ 장안도선점에서 도선사가 탑승한 선박



기타 감면 제도 즉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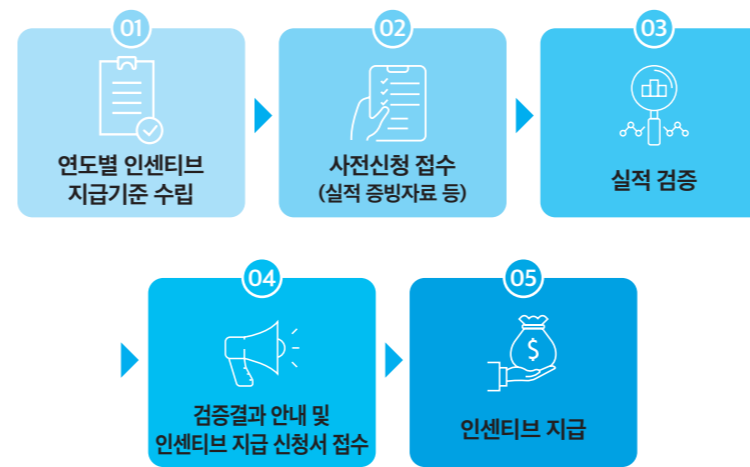
구분	대상	감면율
원양항로	원양항로(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노선을 운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풀컨'선	선박입출항료·접안료 50% (항료표지료 제외)
국제카페리	인천항에 입출항한 국제카페리 여객선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20~40%
환적	내항선-내항선 간 및 외항선-외항선 간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해 환적 후 출항한 화물	화물출항료 100%
	외항 '컨' 환적 화물	화물입항료 100%
연안	인천항에 취항한 연안 '컨' 전용선	접안료·정박료 100%
	연안 '컨' 전용선이 운송한 수출입 '컨' 화물	화물입출항료 100%
우수 선화주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컨' 전용 외항선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1등급 50%, 2등급 30%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30%
AMP	AMP(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한 외항선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15%

2024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안내사항

접수 일정

1차	2차	3차
포워더-①(인천시)	선사-②~④, 화주-①~③, 포워더-①~②	선사-①(신규항로)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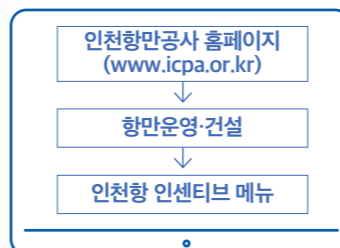
지급 프로세스



공동사항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 실적 적용 대상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예산 및 산정·지급 관련 사항
  -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
  - 단가제 인센티브의 경우, 동일 기준(항목) 내 잔액 발생 시 단가를 증액하고, 배정예산 초과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
  - 실적비례제 인센티브의 경우, 각 기업의 수령액은 기준별(항목별) 배정예산 중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
  -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지급기준의 문구·용어 해석,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024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



# 01 선사 인센티브 제도

**검증 방법** PORT-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



1 신규항로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 신규항로 개설 선사 또는 미주·유럽 항로 유지 선사 · 1년 유지 필수,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5만 TEU 이상 처리 필수									
산식	(실적비례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선박 투입 기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 <th>미주·유럽</th> <th>서남아·중동·아프리카·대양주</th> <th>동남아·극동러시아</th> <th>중국·일본 등 기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한도</td> <td>신규 4억원 유지 3억원</td> <td>신규 3억원</td> <td>신규 2억원</td> <td>신규 1억원</td> </tr> </tbody> </table>	지역	미주·유럽	서남아·중동·아프리카·대양주	동남아·극동러시아	중국·일본 등 기타 지역	한도	신규 4억원 유지 3억원	신규 3억원	신규 2억원
지역	미주·유럽	서남아·중동·아프리카·대양주	동남아·극동러시아	중국·일본 등 기타 지역						
한도	신규 4억원 유지 3억원	신규 3억원	신규 2억원	신규 1억원						
비고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미주·유럽 신규·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준 한도 비율(3:2:1)대로 재조정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지역 구분은 PORT-MIS 시스템에서 분류하는 지역코드에 따름 주 0.5회 서비스의 경우, 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18~34항차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 지급									



2 특별항차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컨' 특별항차를 통해 인천항을 기항하는 선사											
산식	(단가제) 물동량별 인센티브 한도(적/공/수출/수입/환적 모두 인정, Phase In/Out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물동량(TEU)</th> <th>300~499</th> <th>500~999</th> <th>1,000~1,999</th> <th>2,000~2,999</th> <th>3,0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단가(백만원)</td> <td>3</td> <td>10</td> <td>15</td> <td>20</td> <td>30</td> </tr> </tbody> </table>	물동량(TEU)	300~499	500~999	1,000~1,999	2,000~2,999	3,000 이상	단가(백만원)	3	10	15	20
물동량(TEU)	300~499	500~999	1,000~1,999	2,000~2,999	3,000 이상							
단가(백만원)	3	10	15	20	30							
비고	본 인센티브는 해운 시장 변동성 증대로 2024년 한시 운영 선사가 제출한 특별항차 실적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검증하며, 기타 특별항차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3 특별항차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 규모형	항목② - 증가형											
대상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 규모 1~5위 선사 (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선사 (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											
산식	단가제	(단가제)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3,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4위</th> <th>5위</th> </tr> </thead> <tbody> <tr> <td>단가 (천만원)</td> <td>8</td> <td>7</td> <td>6</td> <td>5</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단가 (천만원)	8	7	6	5	4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단가 (천만원)	8	7	6	5	4								
비고	적/공/수출/수입/환적 '컨'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항목①, 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 중복 수령 불가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4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 '컨' 환적(적/공) 물동량 1,000TEU 이상 처리 선사
산식	(단가제) 환적 물동량 X TEU당 5,000원

# 02 화주 인센티브 제도

**검증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



1 수출·수입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화주
산식	(실적비례제) 예산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
비고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의 전략지역(미주·유럽·인도·중동)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적' '컨'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또는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 포워드 또한 신청 가능하며,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포워드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
산식	(단가제) 수출 물동량 X TEU당 40,000원, 수입 물동량 X TEU당 20,000원
비고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중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단,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2 전략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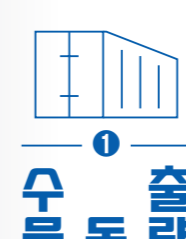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냉동·냉장 '적' '컨' 1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유럽으로부터 냉동·냉장 '적' '컨' 1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 포워드 또한 신청 가능하며,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포워드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
산식	(단가제) 대상 물동량 X TEU당 50,000원
비고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중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단,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3 냉동·냉장 (Reefer)

# 03 포워드 인센티브 제도

**검증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



1 수출·수입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 규모형	항목② - 증가형											
대상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규모 1~5위 포워드 (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포워드											
산식	단가제	(실적비례제) 예산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4위</th> <th>5위</th> </tr> </thead> <tbody> <tr> <td>단가 (천만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단가 (천만원)	5	4	3	2	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단가 (천만원)	5	4	3	2	1								
비고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드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항목①, 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 중복 수령 불가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드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드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2 복합운송 (Sea&Air, Air&Sea)

구분	주요 내용
대상	2024년 인천항을 통해 Sea&Air 또는 Air&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드
산식	(실적비례제) 예산 × 업체별 물동량 ÷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
비고	환적을 통한 복합운송 실적만 인정하며, 수출입 환적 물동량이 다를 경우 더 적은 물동량을 실적으로 인정 수출 또는 수입 환적 중 한 가지만 처리했을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50% 인정



3 인천시 포워드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추진업 등록 포워드 중 2024년 1~3분기 중 인천항 처리 '적' '컨'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G.W.T)이 200톤 이상인 업체
산식	(균등배분제) 예산 ÷ 대상 업체 수
비고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드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

